

의안번호	제465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6월 2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5
----------	-----

제출연월일 : 2020년 6월 29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주차요금감면규정 구체화, 전기차 충전 시 최대 1시간 주차요금 면제) 반영 및 인용조문 변경
- 긴급차량 주차료 면제 규정 신설 및 주차요금 정산방식 변경(카드결제 가능)에 따라 단서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목적·기간·대상 등을 구체화(안 제5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11호)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주차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항 제10호)
- 친환경자동차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전기차충전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 면제 규정을 추가 및 인용조문 변경(안 제5조 제3항 제2호)
- 주차요금 정산방식 변경(카드결제 가능)에 따라 단서조항 신설(안 제8 조제1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방문 확인증을 지닌 사람의 차량(60분까지만 면제하며 60분을 초과할 경우 매 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한다)
2. 관용차량(도, 시·군·사업소 등의 차량을 말한다)
3. 의정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국회의원 또는 충청북도의원이 탑승한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한 도 출입기자 또는 언론기관 증표(로고 등을 말한다)를 부착한 차량
5. 도 본청 실과별 업무추진을 위해 사전에 등록한 차량
6. 도 본청 직원 중 등록장애인으로 차량 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람의 차량
7. 문서수발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청·직속기관·사업소 직원의 차량
8.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 명문가증을 지닌 충청북도민의 차량
9.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또는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여자의 차량
10.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11. 도 주관 행사·회의·교육에 참석하여 무료주차증을 받은 차량

② 제1항제11호에 따라 참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장이 행사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당일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및 승인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지닌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내에서 요금 면제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따라 도금고에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1. 민원방문 확인증(별지 제1호 서식)을 지참한 사람의 차량 : 60분까지 단, 6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한다.</p> <p>2. 관용차량(도, 시·군·사업소 등)</p> <p>3. 의정활동중인 충청북도의회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p> <p>4. 언론기관 명(로고)이 있는 취재차량 및 도 출입기자 차량</p> <p>5. 도 본청 성과별 업무추진을 위해 등록된 차량</p> <p>6. 도 본청 직원 중 등록장애인으로 차량 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람 및 외청·직속기관·사업소 직원이 문서수발</p>	<p>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1.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방문 확인증을 지닌 사람의 차량(60분까지만 면제하며 60분을 초과할 경우 매 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한다)</p> <p>2. 관용차량(도, 시·군·사업소 등의 차량을 말한다)</p> <p>3. 의정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국회의원 또는 충청북도의원이 탑승한 차량</p> <p>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한 도 출입기자 또는 언론기관 증표(로고 등을 말한다)를 부착한 차량</p> <p>5. 도 본청 성과별 업무추진을 위해 사전에 등록된 차량</p> <p>6. 도 본청 직원 중 등록장애인으로 차량 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람의 차량</p> <p>7. 문서수발 등을 위해 방문하는</p>

현행	개정안
<p>등을 위해 방문하는 차량</p> <p>7.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 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의 차량</p> <p>8.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및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여자 차량</p> <p>9.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p> <p>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참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장이 행사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차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당일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승인할 수 있다.</p> <p>③ 주차요금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p>	<p>외청·직속기관·사업소 직원의 차량</p> <p>8.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 명문가증을 지닌 충청북도민의 차량</p> <p>9.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또는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여자의 차량</p> <p>10.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p> <p>11. 도 주관 행사·회의·교육에 참석하여 무료주차증을 받은 차량</p> <p>② 제1항제11호에 따라 참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장이 행사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당일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및 승인할 수 있다.</p> <p>③ 주차요금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p>

현행	개정안
<p>1. 80퍼센트 경감</p> <p>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p> <p>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p> <p>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p> <p>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퍼센트 감면</p> <p>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p> <p>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지닌 사람</p> <p>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p> <p>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p>
<p>2. 50퍼센트 경감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1000cc미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p> <p>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p> <p>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p>

현행	개정안
<p>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고,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도금고에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p>	<p>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내에서 요금 면제</p> <p>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따라 도금고에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관계 법령 발췌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소방차
- 나. 구급차
- 다. 혈액 공급차량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